

제3장

통계조정제도의 사례연구

김향대

제1절 서론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체제는 정부구조, 법제도, 경제,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집중형 통계제도는 국가의 모든 기본적인 통계를 단일 통계 생산기관이 생산하는 것을, 분산형 통계제도는 정부 각 기관들이 각각의 통계작성 부서를 두고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작성하는 통계제도를 말한다(ONS, 2007).¹⁾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집중형 통계제도의 장점은 분산형 통계제도의 단점이,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점은 집중형 통계제도의 단점이 되므로 어느 제도가 우수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다만 두 제도 공히 국가통계의 품질향상과 통계기능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집중형 통계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통계생산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자원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기초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고,

1) 집중형의 국가에서도 농업통계조사는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모든 통계조사를 중앙통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시마무라 시로우, 2006). 스웨덴의 경우에는 1994년에 집중형의 통계제도에서 분산형의 통계제도로 바꾸었는데 이는 사용자의 요구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배려 때문이다(Statistics Sweden, 2004).

자원을 융통성 있게 배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둘째, 국가 통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의 여러 단면들을 일관적인 개념하에서 중복이나 누락 없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응답자의 측면에서도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통계생산기관 사이에 수집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통계조사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통계자료의 수요자들 또한 ‘one stop shopping’을 통해 필요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중형 통계제도의 장점은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한계로 나타난다. 통계작성의 중복과 불일치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가 하면, 개념이나 분류기준의 불일치로 인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통계숫자를 발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에서는 부실한 통계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는 해당 정책부서에서 통계작성을 직접 수행하므로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 통계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각 정부기구에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통계작성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처럼 각 제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내에서는 조정기능을 갖고 있다. 예컨대, 집중형 통계제도하에서는 조직 외부의 다양한 통계수요자와 조정을 하며,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는 분리된 통계기관들의 계획과 활동을 조정하고 선도하는 효과적인 조정기관이 마련되어 있다. 각각의 통계기관들이 중복 없이 일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또한 국가의 긴급한 통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정기관이 필요함은 일찍부터 언급되어 왔다(Shiskin, 1970).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의견상으로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주요 통계의 대부분을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집중형적인 성격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통계조정 기능에 있어서도 어느 한 제도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양 제도의 특징을 모두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정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통계조정제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통계조정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통계조정 개념과 우리나라 통계조정제도의 현황

국가 통계생산기능에 있어서 통계생산기관간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국가통계와 통계조직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서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국가통계를 구성하는 개별 통계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통계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계조정이 필요하다. 국가통계는 국가전반에 걸친 사회·경제 현상의 실질적 구조와 그 현상적인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각 분야의 통계 상호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서는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가져야 한다(이재형, 2004).

통계조정 개념 및 목적에 대한 견해는 개인이나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것은 없으나 초기에는 중복통계의 생산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개념이나 분류의 표준화를 행함으로써 통계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통계조정의 주안점을 두어 왔다.²⁾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중장기 통계

2) 다음은 1982년 부시 미국 부통령이 규제완화 정책에 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OMB 내의 통계조정담당 인원을 감축하였을 때, J. Bonnen이란 사람이 1983년에 *The American Statistician*에 기고한 “미국 통계조정의 오늘: 재앙인가 치욕인가”라는 글에서 인용한 통계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분산형의 통계제도에서는 통계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통계기관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통계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통계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신규통계의 수요를 결정하여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자료의 공백이나 중복을 방지한다. 둘째, 통계자료의 사용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당한 통계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의 오용을 방지한다. 셋째, 통계정책을 공공정책 수립과 연결하고 조정한다. 넷째, 통계적인 감시를 통해서 기존의 통계의 질을 유지하고 최신의 설계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게 한다. 다섯째, 수집된 통계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한다. 여섯째, 통계적인 결정에 대한 정직성의 보호를 한다. 일곱째,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여덟째, 적절한 통계적인 설

개발계획 수립부터 통계작성기관 평가 등, 통계작성의 시작부터 공표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형(2004)은 이를 첫째, 통합된 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계계획의 수립, 둘째, 그 계획에 기초한 개별통계사업의 조정, 셋째, 이러한 원칙하에서 작성된 개별통계를 전체적인 통계체계에서 통합하는 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통계행정을 종합 관장하는 통계청이 있으며,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등 각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고유통계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의 현지조사업무 또는 자료수집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통계기관으로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다(통계청, 2007).

우리나라의 통계조정은 통계법을 근간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계 조정의 수단으로는 통계작성기관의 지정제도, 통계 작성의 승인제도, 통계품질진단 제도 등이 있다. 통계작성기관 지정제도는 통계작성기관의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모든 정부 부처를 포함, 일부 중요 통계를 생산하는 민간기관까지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통계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이재형, 2004).

통계작성 승인제도는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계획을 미리 통계청에 제출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는 제도이다. 통계청장은 통계체계의 확립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에 대해 통계작성의 실시, 중지, 변경 또는 통계작성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중복 통계의 작성을 방지하고 통계의

계와 기준, 추정치의 사용, 행정자료의 활용, 행정자료에 대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응답부담 경감을 한다. 아홉째,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자료원천의 통합을 허용함으로써 다중의사결정과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표준개념, 표준분류, 표준질차를 확립한다. 열째, 연방/주/지역 통계제도를 감시하고 연방정부의 통계활동을 주/지역 정부, 외국, 대학, 사기업 등의 통계활동과 연결하고 조정하는 것을 촉진한다. 열한째, 분산형 통계제도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Bonnen, 1983).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통계작성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통계의 유용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통계조정 수단으로는 통계품질관리제도가 있다. 통계품질관리란 통계가 이용자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작성·보급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품질진단은 통계작성환경진단, 통계활용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진단,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진단, 자료수집방법의 타당성 진단,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 진단, 주제별 진단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품질관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 통계품질관리팀이 창설되었고, 2005년에 품질관리과로 조직을 확대,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우리나라의 품질진단은 정기품질진단(통계법 9조), 수시품질진단(통계법 10조), 자체품질진단(통계법 11조)이 있다.

이외에도 통계 상호간의 연관성과 비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측정단위, 각종 통계용어의 정의, 경제활동이나 상품의 분류 등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과 같은 표준분류를 제정하고 이를 각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절 외국의 통계조정제도

선진국들은 통계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국가통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통계행정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본절에서는 선진국의 통계조정제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통계조정제도와 비교해 보고, 나아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은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Department of Commerce)을 비롯한 10개의 주요 통계작성기관 및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70개 이상의 연방정부기관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감독과 조정에 관한 책임은 대통령실 행정관리에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MB) 에서 담당하고 있다.

통계조정활동의 법적인 근거로는 문서작성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1995), 예산회계절차법(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 1950), 그리고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등이 있다. 문서작성감축법에는 OMB의 주요 통계정책과 통계조정에 관한 다음의 9개의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① 미국 통계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수집된 정보의 통합, 객관성, 완전성, 유용성, 비밀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통계활동을 조정하는 기능, ② 각 통계기관의 예산 신청의 우선순위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통계예산 사용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작성 기능³⁾, ③ 통계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 분류, 자료 제공, 통계자료 공표의 시의성, 필요한 통계자료의 출처에 관한 정책·원리·기준·지침의 개발 및 이의 이행에 관한 감시 기능, ④ 통계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각 통계기관들의 정책·원칙·기준·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기능, ⑤ 개인의 권리보호와 비밀보호가 전제되는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유 촉진 기능, ⑥ 비교 가능한 통계생산을 포함한 미국의 국제적인 통계활동 참여에 관한 조정 기능, ⑦ 수석통계관(Chief Statistician)의 임명 기능, ⑧ 통계정책에 관한 통계기관간 위원회(Interagency Council on Statistical Policy)의 설립 기능 - 이 위원회의 장은 수석통계관이 됨, ⑨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통계정책기능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기능 등이 그것이다.

OMB 소속의 수석통계관은 경력직 공무원의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석통계관은 통계생산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직원도 몇 명 되지 않지만 미국 통계제도에 관한 중요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장기계획 수립 및 예산책정이다. 연방통계계획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OMB의

3) 통계예산의 신청과 사용에 관한 보고서는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라는 이름으로 매년 하원에 보고되는데, 이 보고서는 통계활동과 통계예산에 관심이 있는 하원의 각 위원회의 감시 역할을 도와주고 있다. 참고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하원에 요청한 2008년도에 필요한 통계인력의 수는 15,035명이며 요청 예산은 약 2조 9천억원(30억 달러)이다.

예산 담당자와 협조하여 통계예산을 조정한다. 둘째, 정책과 기준의 설정이다. 산업분류·상품분류·직업분류·지역단위 분류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인종과 민족에 관한 자료 수집에 관한 기준 설정, 통계조사에 관한 기준, 비밀보호 준수에 관한 기준, 경제지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기준 설정을 한다. 셋째, 통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문서작성감축법에 따르면 10명 이상에 대해서 수집한 모든 정보는 OMB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처럼 수석통계관은 통계조사에 관한 강력한 감시 기능을 보유하고 응답자들의 부담을 줄이며 필요한 새로운 일을 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석통계관은 통계기관간 조정 및 국제조정 역할을 한다.

2. 영국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 국가로 각 국가는 의회를 두고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구조의 영향은 분산형 통계제도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Karen Dunnell, 2007). 영국에서의 통계조정은 통계생산기관들의 모임인 정부통계기구(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GSS)를 통해 각 기관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영국의 중앙통계국인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장이 GSS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GSS 산하 정책운영위원회에서는 연간 통계조사를 사전 승인한다. 그러나 2008년 4월부터는 새로 제정된 「통계 및 등록 서비스 법」에 의해 설치되는 독립기관인 'Statistics Board'에서 통계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ONS는 Statistics Board에 흡수된다.

3. 프랑스

프랑스는 중앙통계기관인 국립경제통계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s Studies: INSEE)와 19개의 정부 통계기관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통계조정은 국가통계정보위원회(French National Council for Statistical Information: CNIS)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INSEE는 이 위원회의 사무국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통계정보위원회는 경제·재무·산업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회의원과 정부기관 및 재계·노동계·교육계·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각 통계부서는 프로젝트를 CNIS에 제출하고, CNIS는 각 프로젝트의 목적 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조사준비에서부터 결과 공표까지의 모든 과정을 검토하고, 통계생산자와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 통계사용자간의 합의도출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4. 일본

일본은 총무성 통계국 통계기준부에서 통계법(1947), 통계보고조정법(1952)에 의해 통계조정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통계조정수단으로는 지정통계제도, 통계승인제도, 감사제도 등이 있다. 총무성 대신이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조사에 대해서 작성승인을 하며,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는 신고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계보고조정법에서는 보고통계의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지정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이 실시하는 지정통계조사 실시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통계기관에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재형, 2004). 2004년 중반에 통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분산형 통계제도하에서 통계조정기관의 역할, 특히 통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⁴⁾ 이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통계개발을 위한 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으며(Kitada Hiroyuki, 2006), 그 일환으로 2007년 5월에 통계법이 개정되었고 「통계보고조정법」은 폐지되어 통계법에 통합되었다. 개정된 통계법에 추가로 나타난 주요 통계조정관련 내용은

4) 이외에 지적된 점으로는 대부분의 공식통계가 각 정부부처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 사회가 요구하는 통계의 생산이 불충분하다는 점, 통계작성시 행정자료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 정보통신기술의 통계에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하도록 법정화하였으며, 둘째, 총무대신은 사업소 모집단 DB를 구축·제공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행정기록정보를 통계의 작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본계획안 등 통계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기 위해 통계위원회를 내각부에 설치하여 공적 통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5. 캐나다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앙통계기관이 대부분의 국가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계조정제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캐나다의 경우, 전형적인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든 공식통계를 생산하고 보급하며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를 지원한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통계제도 조정을 위해 선임통계관이 지정되어 있다. 캐나다의 선임통계관은 수상이 임명하며 캐나다 통계청장으로서 차관(the rank of deputy minister)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산업부장관(Minister of Industry)에게 보고한다. 다른 차관들처럼 비정무직이지만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⁵⁾ 캐나다 선임통계관은 캐나다 통계청의 예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통계청 내의 전보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통계청장은 차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각의 중요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장은 각 부처의 차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각 부처가 정책실시를 위해 필요한 통계는 무엇인가, 또한 통계에 의해 어떠한 것이 명백해지는지를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한 통계조정을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5) 현 통계청장인 Ivan Fellegi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제4절 요약 및 결론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정부구조, 법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조정제도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의 통계조정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나 캐나다처럼 중앙통계청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프랑스의 경우처럼 특별위원회가 조정기관의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통계조정 수단으로는 통계승인제도, 통계작성기관 지정, 예산심의, 표준분류 제정, 각 기관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등이 있다.

통계승인제도는 대부분의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계작성기관의 지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통계조정제도의 하나로 통계예산에 대한 검토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통계의 품질향상과 통계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조정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문별 통계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관된 분류체계의 적용이 필요하며, 기존에 정비되어 있는 각종 분류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등을 통한 적용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재형, 2004).

그러나 최근의 통계조정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나라 전체의 통계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조정은 장기적인 통계계획 및 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비롯하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고품질의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의 통계생산자와 이용자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합의를 통한 조정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용자들을 통계조정제도의 한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일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계자료는 주·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사용되고 물가지수는 민간부문의 급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러한 점이 미국 통계발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통계 역시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을 갖고 있기는 하지

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통계조정이라는 개념하에 이용자를 포함함으로써 정책입안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통계의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여 떠들썩했던 일이 있다. 원인분석 결과, 작성통계의 수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직이 축소되어 담당인력 및 연구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도달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통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정부에서는 그 대책으로 2005년에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 2006년에 “중기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고, 2007년에는 통계법을 개정하였다. 대학, 연구소, 언론, 정부, 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인해 최근 2~3년간에 통계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통계는 전문적인 속성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급속히 발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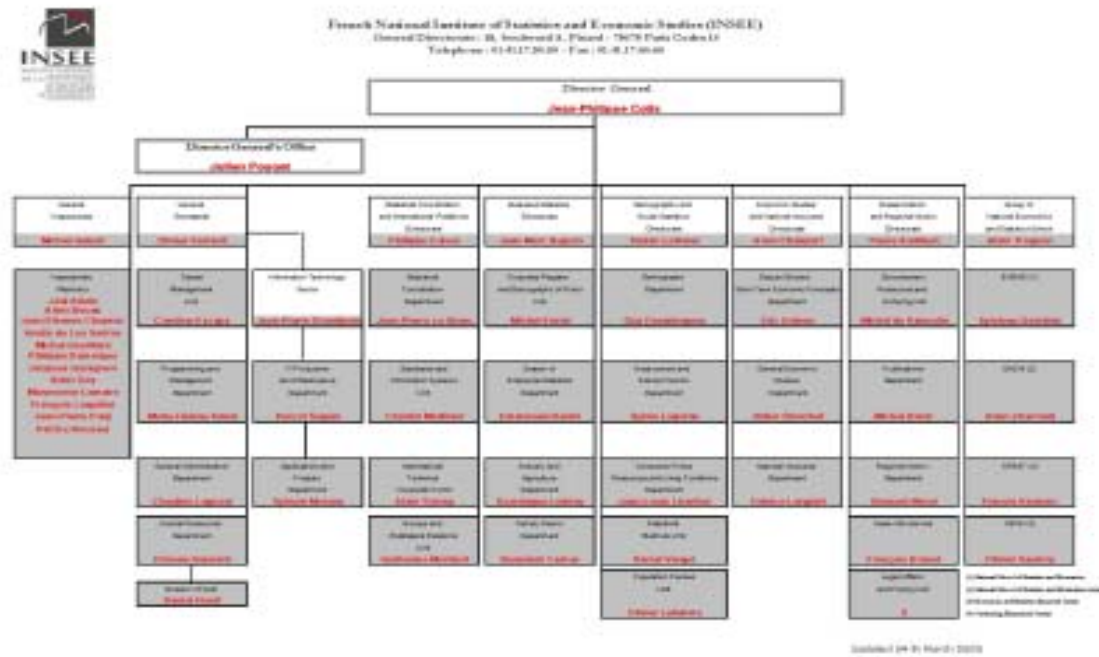
참고문헌

- 이재형(2004),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2001), 「주요국가의 통계법령」.
- _____ (2002), 「통계제도의 국제비교」.
- _____ (2005), 「국가통계 바로알기」.
- _____ (2007), 「일본 통계법의 개요」.
- _____ (2007), 「통계행정편람」.
- 시마무라 시로우(2006), 「통계제도론」.
- Bonnen, J.(1983), “Federal Statistical Coordination Today: A Disaster of a Disgrace?”, *The American Statistician*, Vol.37, No.3, pp.179-192.
- Bonnen, J. et al.(1981), “Improving the Federal Statistical System: Report of the President's Reorganization Project for the Federal Statistical System”, *The American Statistician*, Vol.35, No.4, pp.184-196.
- Dunnell, K.(2007), “Evolution of the United Kingdom statistical system”, http://unstats.un.org/unsd/statcom/statcom_seminar/UK%20paper%20for%20UNSC%20final.pdf.
- Hiroyuki, Kitada(2006), “A New Direction in the Reform of the Statistical System in Japan”, <http://www.stat.go.jp/English/info/meetings/eastasia/pdf/3jpaper.pdf>.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2007),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08*.
- ONS(2007), “UK Parallels with the US Federal Statistical System”, <http://www.statscom.org.uk/uploads/files/other/Parallels%20Washington%20Oct%202007.pdf>.
- ONS(2007), 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http://www.opsi.gov.uk/acts/acts2007/pdf/ukpga_20070018_en.pdf.

- Shiskin, J.(1970), “Strengthening Federal Statistics”, *The American Statistician*, Vol.24, No.1, pp.15-20.
- Statistics Sweden(2004), “The System of Official Statistics in Sweden”.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1996), *A Comparison of the U.S. and Canadian Statistical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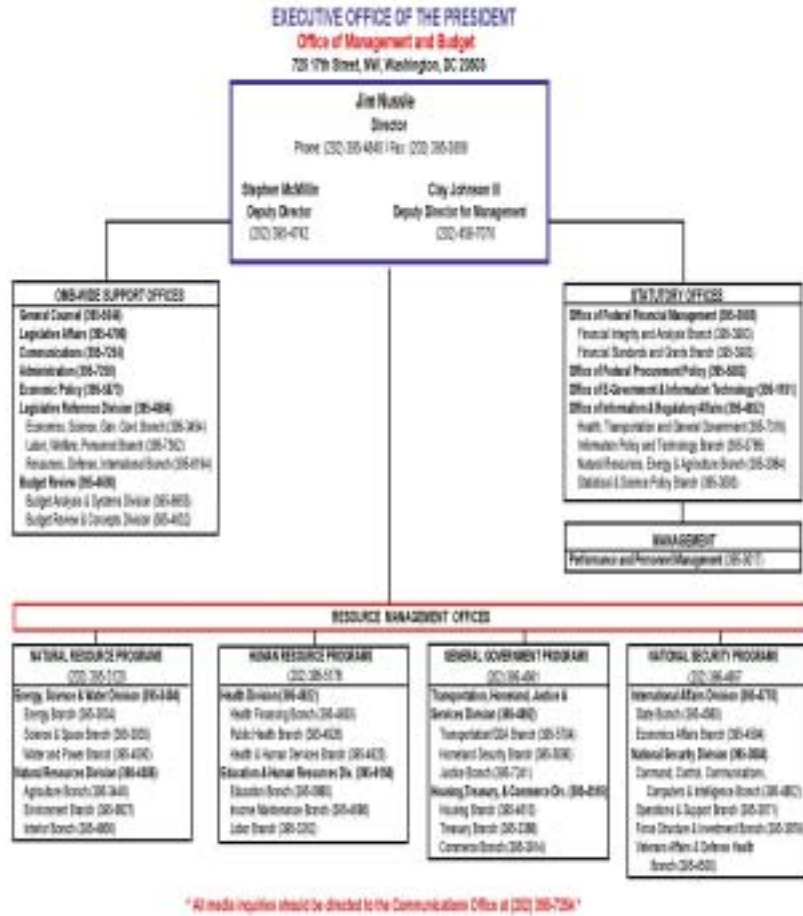
< 부 록 >

1. INSEE 조직도



http://www.insee.fr/en/a_propos/connaitre/organisation/orga_en.pdf

2. OMB 조직도



http://www.whitehouse.gov/omb/omb_org_chart.pdf